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규제특례 운영현황 보고 및 신제품 판로지원〉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40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규제특례 운영현황 보고 및 신제품 판로지원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5.
3. 회부연월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창출한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아울러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융합 제품 특화 수출절차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규제특례 운영현황 보고 및 신제품 판로지원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부여 현황과 법령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8 신설),

정부가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 마케팅 및 신제품 특성에 따른 수출 절차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0조의8(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및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현황, 제10조의4제6항 및 제10조의6제13항에 따른 법령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촉진과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 마케팅 및 신제품 특성에 따른 수출 절차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와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6개 부처가 8개 분야의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이 이를 총괄하고 있음¹⁾.

1) (규제샌드박스) 6개 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국조실이 총괄하는 구조

* 산업융합(산업부), ICT/연구개발특구(과기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모빌리티(국토부), 순환경제(기후부)



그 중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10조의3²⁾)와 임시허가(제10조의6³⁾) 제도를 두고 있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새로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임시허가는 관련 기준·규격 등이 없는 경우 등에 임시적으로 제조·판매 등을 허용하는 제도임.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부여 현황과 법령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 마케팅 및 수출 절차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특례 제도 운영을 관리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운영 현황과 법령정비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국회의 정례적 확인이 가능해질 경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과정에 대한 정책 평가 및 환류 기능이 강화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수출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 진출 및 확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여러 분야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국무조정실이 이를 총괄하는 체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융합 분야에 한하여 별도의 국회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운영의 통일성 및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간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특례부여 및 규제법령 현황 등은 현재 국무조정실이 총괄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산업융합 분야의 경우에도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⁴⁾에 따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현황 등이 공개되고 있음.

한편, 안 제30조제3항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부분과 관련하여, 최근 현행법 제18조제2항⁵⁾이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금융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해당 규정은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판로 확보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산업통상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산업융합 촉진법」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추진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 / 시행 2026. 6. 3.>

1. 연구개발
2.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
3. 그 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문 의 처
02)6788-5457